

보육교직원 의무교육 및 필수교육 안내

1) 보육교직원 필수 의무교육

보육교직원 안전교육 (보수교육연계)	근거	영유아보육법 제 23조의 2,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[별표8], 2024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(120쪽)
	대상	모든 보육교직원
	교육횟수	연 1회(3시간) ※ 기본, 심화, 영아담당교사 I,II, 유아담당교사 I,II 과정 중 택1
	교육정보	-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주관하는 온라인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전 보육교직원 이수(기본, 심화, 영아담당교사, 유아담당교사 中 택 1) [보수교육 연계]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대상자가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주관하는 안전교육을 수료한 경우, 동일연도 내 보수교육 건강안전 영역 중 해당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
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(보수교육연계)	근거	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, 아동복지법 제26조의 2 외
	대상	모든 보육교직원
	교육횟수	연 1회(1시간 이상)
	교육정보	- 온라인교육: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외 - 집합교육: 대전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외
어린이안전교육	근거	-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1항 * 원장은 보육교직원에게 매년 응급처치 실습(소아심폐소생술 포함)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해야함 -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'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'에서 교육 이수를 하여야 함.
	대상	보육교직원(주된 업무가 보육,교육,상담,체험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)
	교육횟수	연 1회(4시간 이상, 응급처치 실습(2시간 포함))
	교육정보	- 집합교육: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(행정안전부 참고)
응급처치교육 (심폐소생술) (실습포함)	근거	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
	대상	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
	교육횟수	연1회 이상
	교육정보	- 집합교육: 육아종합지원센터, 적십자사, 소방서, 대한심폐소생협회 등 (실습포함)

성폭력예방교육	근거	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1항, 동법 시행령 제 2조
	대상	모든 보육교직원 / 신규 임용된 경우, 임용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실시
	교육횟수	연 1회(1시간 이상)
	교육정보	- 온라인교육: 여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,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* 여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 필수
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	근거	긴급복지지원법 제7조, 시행규칙 제2조의 3
	대상	모든 보육교직원
	교육횟수	연 1회(1시간 이상)
	교육정보	- 온라인교육 :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
장애 인식개선 교육	근거	장애인복지법 제25조의 2,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6조
	대상	모든 보육교직원
	교육횟수	연 1회(1시간 이상)
	교육정보	- 대면 교육 1회 이상 필수 실시(중 교육 포함) *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상에서 '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면교육을 포함해야 한다' 라고 규정되어 있음. * 직군이나 인원 상관없이, 기관의 규모와 상황에 맞게 방법적으로 대면 교육 1회 이상 실시 *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(www.able-edu.or.kr)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는 실적 매뉴얼에 따라 실적 제출
등·하원 안전교육	근거	영유아보육법 제33조의 3
	대상	모든 보육교직원
	교육횟수	연 1회(1시간 이상)
	교육정보	- 온라인교육 : 어린이집안전공제회
고농도 미세먼지 · 오존 대응교육	근거	[2025년 보육사업안내 본문 P.111] * 어린이집 원장은 미세먼지 및 오존의 위해성과 행동요령 등을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
	대상	모든 보육교직원
	교육횟수	연 1회(1시간 이상)
	교육정보	- 방법: 집합교육, 온라인 교육, 자체교육 등 - 온라인교육: 어린이집안전공제회 * 보육교직원 안전교육(어린이집안전공제회) 이수 시 갈음 가능
집단시설 종사자 결핵감염 예방교육	근거	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의2
	대상	결핵예방법 제11조 제1항에 명시된 기관의 종사자 또는 교직원

	교육횟수	연 1회(2시간 이상)
	교육정보	대한결핵협회 홈페이지-게시판-자료실 대한결핵협회 사이버 연수원 - 문의 : 대한결핵협회 교육센터 1544-5035
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교육	근거	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4(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)
	대상	모든 보육교직원
	교육횟수	연 1회, 1시간 이상
	교육정보	-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 - 온라인 교육 :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
자살예방교육	근거	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0조의2
	대상	모든 보육교직원
	교육횟수	연 1회 이상(1시간)
	교육정보	- 온라인교육 :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

2) 근로자 법정의무교육

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	근거	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조
	대상	5인 이상 사업주 및 모든 직원
	교육횟수	연 1회(1시간 이상)
	교육 정보	- 온라인교육: 중앙교육연수원예방교육통합관리 - 외부강사 위탁교육이 원칙이나 다음 2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 자료 배포, 직원연수, 회의, 온라인 교육 실시 가능 *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또는 어느 한 성(性)으로만 구성된 경우 교육 자료 게시 및 배포로 대체 가능
개인정보보호교육	근거	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(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)
	대상	개인정보의 이용, 활용 등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(모든 보육교직원)
	교육횟수	연 1회 이상(1시간 이상)
	교육정보	- 온라인교육: 행정자치부 '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' 외 - 자체교육: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교육자료 이용

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	근거	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 2
	대상	모든 보육교직원
	교육횟수	연 1회(1시간 이상)
	교육정보	- 온라인 교육: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포털
퇴직연금교육	근거	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
	대상	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의 가입 근로자 (제외대상 :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, 개인형 퇴직 연금에 가입한 근로자)
	교육횟수	연 1회 이상
	교육정보	- 온라인교육 : 근로복지공단(퇴직연금-가입자교육-교육자료실)

3) 대상자별 의무교육

영유아 성교육 담당자교육	근거	[2025년 보육사업안내 본문 P.122] *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 내에서 영유아 성 행동 문제 관련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보육교직원 중 영유아 성교육 담당자를 지정하고 매년 1회 교육*을 이수 받아야 함
	대상	영유아 성교육 담당자
	교육횟수	연 1회(1시간 이상)
	교육정보	-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-러닝 홈페이지(https://lms.educare.or.kr) * 자세한 사항은 「어린이집 영유아의 성행동문제 관리·대응 매뉴얼」 참고
소방안전 관리자 교육	근거	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, 제29조
	대상	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(소방안전관리보조자)
	교육횟수	강습교육 : 자격 취득 과정 실무교육 : 2년에 1회 *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(8시간) *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(4시간)
	교육정보	- 온라인교육: 한국소방안전협회
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	근거	「도로교통법」 제53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,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5
	대상	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, 운전자, 동승보호자
	교육횟수	신규교육 : 어린이통학버스 운영, 운전, 동승하기 전 정기교육 : 2년마다 1회(3시간 이상)
	교육정보	- 온,오프라인 교육 : 한국도로교통공단

어린이집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	근거	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 시행규칙20조
	대상	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책임자(담당 보육교직원)
	교육횟수	2년에 1회(4시간 이상) 어린이 놀이시설을 인도받은 경우: 인도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: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: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
	교육정보	- 온라인 교육 : 안전관리지원기관(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참고)
성희롱·성폭력 고충 담당자교육	근거	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법률」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, 2024년도 폭력예방교육 운영 안내(p.97)
	대상	고충 담당자(상담원)
	교육횟수	신규 지정 후 6개월 이내 1회
	교육정보	-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-러닝
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	근거	「승강기 안전관리법」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
	대상	승강기 소유주(관리주체) 또는 승강기 설치 건물의 안전관리자로 지정된 담당자
	교육횟수	신규교육: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후 3개월 이내 1회 보수교육: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(4시간이내)
	교육정보	- 집합&온라인 교육: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바로가기
실내공기질 관리자교육	근거	「실내공기질 관리법」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
	대상	연면적 430㎡ 이상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관리 책임자
	교육횟수	- 신규: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의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(6시간) - 보수: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(6시간)
	교육정보	- 집합&온라인교육: 환경보건협회 바로가기
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	근거	석면안전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
	대상	지정된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
	교육횟수	신규교육: 8시간 이상 *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 보수교육 : 2년마다 4시간 이상 * 신규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다음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

	교육정보	- 온라인 : 국립환경인재개발원
식품위생교육	근거	「식품위생법」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
	대상	상시 근무자 50인 이상 집단 급식소의 기관장
	교육횟수	- 매년1회 (시간이상) * 집단급식소를 설치, 운영하려는 자는 6시간
	교육정보	- 온라인 : 한국식품산업협회
조리사 위생교육	근거	식품위생법 제56조, 동법 시행령 제84조
	대상	상시 50인 이상 집단급식소의 조리사, 영양사
	교육횟수	매 년 1회(6시간)
	교육정보	- 집합&온라인교육: (사)한국조리사협회 중앙회, (사)대한영양사협회 * 문의 : 사)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02-734-1545

관련 링크 :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안전교육시스템 > 필수 의무교육 안내 (<https://e.csia.or.kr>)

※ 위 내용은 관련법 개정과 어린이집 규모 및 운영 형태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.

※ 2025. 3. 26.(수) 기준이며,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.